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11호
발행일: 2026. 10. 29. (목)
제439회 국회(정기회, 2026. 9. 1. ~ 2026.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나.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II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39회 국회(정기회)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6년 9월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7건, 9월 17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 70건, 10월 1일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64건으로 모두 15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9회 국회 제2차, 제9차, 제10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등을 하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규모유통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출범 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일괄해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개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9회 국회의 2026년 9월 3일, 9월 17일,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5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5인
2	법제사법위원회(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법제사법위원회(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1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1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1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20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6	법제사법위원회(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7	정무위원회(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3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3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36	재정경제기획 위원회(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37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3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40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4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5인
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4	국방위원회(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46	행정안전위원회(3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4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4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5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5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5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5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4	행정안전위원회(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6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6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69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7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7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7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76		10 · 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77	문화체육관광 위원회(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1	문화체육관광 위원회(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82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8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84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8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1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9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9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0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10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1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10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10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10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1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0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1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11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11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11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118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1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120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121	보건복지위원회(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3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33	보건복지위원회(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3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13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1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13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1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1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14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14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47	국토교통위원회(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148	정보위원회(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 박선원의원 등 12인
149	성평등가족위원회(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15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15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편 II 등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편

개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존 산업안전보건체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으나, 기업이 사전에 안전설비와 관리체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으로 강화하고,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그 주요 과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기업이 사고 예방에 투자하도록 경제적 ·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본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Legal Update]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참조).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락,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	2026-10-01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 · 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고용부)

□ **과제목표**

○ '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 1만 명당 0.29명(OECD 평균)으로 감축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 **주요내용**

○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업종·규모·종사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확대(원청, 타 업종) 등

○ (실효적 산재예방으로 안전권 강화) 위험성평가 개선(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

-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한 강화(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 직종 확대)

-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판정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

○ (새로운 위험 예방) 신산업 안전기준 법제화,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 신설

*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 제한 등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3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책임·제재·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관리 강화

【 책임·제재·감독 강화 】

○ **(책임)** 적정공기·공사비 제공,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강화 등 발주·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全과정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역량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26.上)

○ **(제재)** 안전책무 등 위반 사망시 과징금 부과 신설('26.上 법 제·개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다수·반복 발생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
「건설안전특별법」 안전관리 의무 위반해 사망시 건설사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매출액 3%, 하한1천억원)

○ **(감독)**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관 확대(1,445→2,095명), 패트롤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 감독 대폭 확대(2.4→5만개)

【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안전관리비 반영 확대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을 추가해 안전보건 사각지대 축소(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26.上)

*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확대 지속 추진

○ 노동자 작업중지요구권 신설 및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하고, 국민참여형 포상금 도입해 산재위험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 지급

* (현행)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선)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위한 매뉴얼 제정('26.6월)

○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계적 인상 검토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고용노동부, 2025. 12. 11.)

⑦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응

□ 추진배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사고사망 증가,*** **기후변화·산업전환 대응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의 **안전·건강 보호조치 마련** 필요

*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유족급여 승인기준): ('23) 83명 → ('24) 101명(+18명)

□ 주요내용

○ **(일하는 사람 보호 확대)**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대상 및 안전보건조치 확대**

- 택배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제도 신설** 방안 마련 및 고위험군 대상 **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26년 40억, 2.4만명)
-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기간 단축방안」**('25.9.1) **이행**을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26년말 160일**('27년말 120일)**까지 단축**

* 「산재 신청 → 신속 보상 → 적시 치료·재활 → 직업복귀」 종합 지원 추진

○ **(사회심리적 케어 확대) 감정노동자** 등 정신건강장해 예방조치 강화, **중대재해 피해 동료·재난 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및 인프라 확대

-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 도입(과태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대상 확대, 노동자건강센터 지속 확충

○ **(기후위험 요인 선제대응)** 한파 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한랭질환자 발생 시 119신고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자 보호조치 법제화**

- **폭염** 대비, 작은 사업장 중심 **온열질환 예방 설비**(이동식에어컨 등) **지원 확대** ('26년 280억, +80억), **지방정부·민간**과 **보건조치 정보제공·지도**(14만개소)

○ **(산업전환 위험요인 예방)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확장**하여 화력발전소 철거·해체, 송·배전 시설 구축 등 **발전산업 전환 과정**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 수립**

□ 이행계획('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랭질환 예방지도(~2월) ·건강진단 비용지원(연중)	·온열질환 예방지원(6월~) ·정신건강보호 강화(6월)	·노무제공자 보호 강화(9월) ·한랭질환 보호 법제화(9월)	·산업전환 위험요인평가(12월)

출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2025. 11.
장철민 의원안: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게 과징금 부과 2025. 11.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등 2025. 11.
김정호 의원안: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장관 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요청 근거 신설 등 2025. 11.
정혜경 의원안: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2025. 11.
우재준 의원안: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2025. 1.
박정 의원안: 하도급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지급 의무화 2025. 1.
문진석 의원안: 하도급 계약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 2024. 11.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NARS 브리프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쿠팡의 노동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 : 국정조사에서 물어야 할 질문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6. 2. 10.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故 장덕준 씨가 과로로 사망한 이후, 쿠팡 물류 · 배송 현장에서는 사고 · 질병 · 과로 등으로 노동자와 배송기사의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과도한 야간근로 논란에 산재은폐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른바 '로켓배송' · '새벽배송'으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 물류 환경은 배송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형태, 구조화된 장시간 야간근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통해 노동자와 배송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쿠팡을 대상으로 예정된 국정조사에서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였다.

산업재해 근절 대책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 설치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개편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5. 12. 29.

□ 한국의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영국의 1970년대 수준에 머무르며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십만인율은 1978년 45명에서 2023년 3.9명으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영국의 1979년 산재율 3.1명보다 많은 수준이며 더 이상 줄어드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는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위원장(로벤스 경)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노 · 사, 여 · 야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법체계 정비, 국가 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하며 영국의 산재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함
 ○ 영국은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통해 법체계 정비, 국가 기구 설치를 제안하여, 산재율을 1979년 3.1명에서 2018년 0.8명까지로 줄임
 ○ '로벤스 위원회'의 정확한 현황 파악 능력과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 등이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혁신의 핵심요인임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규제 강화나 사후적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산업안전보건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한국판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그 논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산업 구조와 노동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판 「로벤스 보고서」를 마련해야 할 것임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층적 접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 12. 31.
한국은 산재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었지만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고사망자가 집중되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원인을 자원 부족으로 본다. 안전보건조직을 갖춘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고, KOSHA-M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산안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전담 인력과 적절한 예산, 보장된 활동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안전은 안전문화, 제도, 원 · 하청 관계, 정부 정책이 서로 맞물려 형성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사업장을 하나씩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보고서는 다층적 접근을 제안한다. 대기업과 연결된 사내협력사나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원청기업, 협회 ·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위험성평가처럼 노동자의 참여와 협조가 관건인 영역에서는 현장 수용성이 높은 참여형 산재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나.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개요

유통업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정 지급기한의 상한에 맞춰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이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통업체의 대금 정산 지연은 납품업체의 운전자금 부족과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2025년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기로 유통업체의 지급능력과 정산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같은 해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국회는 관련 개정안 18건을 통합 심사하여 최종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개정법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은 상품대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운전자금 부담과 외부 차입 의존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유통업체 등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대금 지급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단기적인 자금 운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직매입과 판매중개 등 거래 유형을 구분해 적용 여부와 적용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 · 매장임대차 · 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2026-09-17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 **과제목표**

○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및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근절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 **주요내용**

○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및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全 과정의 **정보제공** 확대
-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하고, 단체구성권 등을 통해 **협상력 강화**
- 대금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 (**경제적 약자 보호 기반 강화**)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 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폐업여건 개선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리점주·수급사업자·입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도입
- **가맹 창업 정보**가 **신속** 제공되도록 **공시제**를 도입하고,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 가능**하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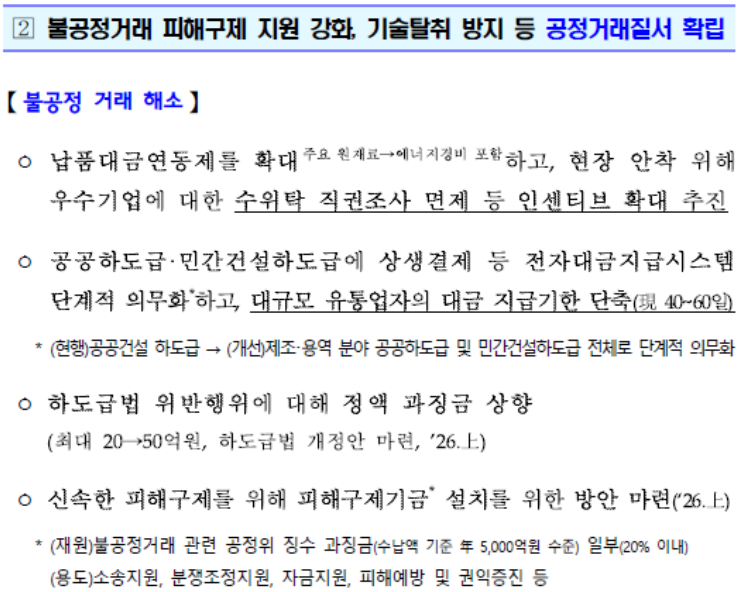
○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자사주**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부당이득 비례 엄정제재**를 위한 과징금 합리화

○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 ▲**직권조사** 도입 ▲**조사 거부·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도입 ▲**조달구매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2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강화, 기술탈취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 불공정 거래 해소 】

○ 납품대금연동제를 확대(주요 원재료→에너지경비 포함)하고, 현장 안착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추진

○ 공공하도급·민간건설하도급에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단계적 의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現 40~60일)

* (현행)공공건설 하도급 → (개선)제조·용역 분야 공공하도급 및 민간건설하도급 전체로 단계적 의무화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 상향
(최대 20→50억원,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 '26.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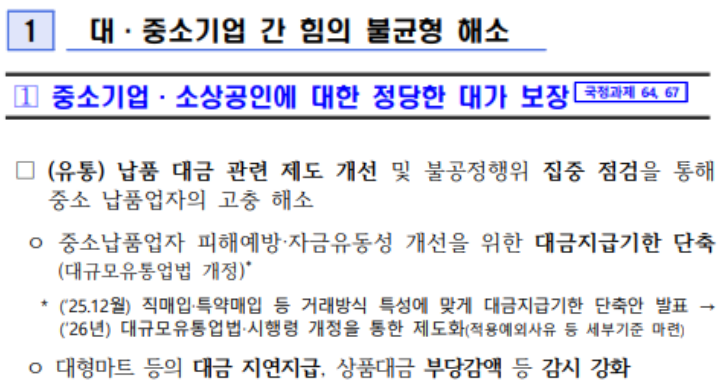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26.上)

* (재원)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징수 과징금(수납액 기준 年 5,000억원 수준) 일부(20% 이내)
(용도)소송지원,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등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 2025. 12. 19.)



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국정과제 64, 67

□ (유통) 납품 대금 관련 제도 개선 및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을 통해 중소 납품업자의 고충 해소

○ 중소납품업자 피해예방·자금유동성 개선을 위한 대금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25.12월) 직매입·특약매입 등 거래방식 특성에 맞게 대금지급기한 단축안 발표 → ('26년)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화(적용예외사유 등 세부기준 마련)

○ 대형마트 등의 대금 지연지급, 상품대금 부당감액 등 감시 강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 2025. 8.
오세희 의원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2025. 8.
임미애 의원안: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단축 등 2024. 1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질서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2026. 6. 11.
최근 플랫폼이 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유통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구조 변화의 양상을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거래질서, 유통거래 관계, 기업집단 규율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분석하였다.

플랫폼 시장구조의 변화와 전자상거래법 개편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24. 12. 22.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 이슈 및 문제 해결 방안도 급변하는 시장에 맞추어 신속히 변경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연구와 입법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의 경우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해외의 법제를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소규모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소규모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 및 입법 시도, 해외의 학설 및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편 과제 및 개편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II

개요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뒤(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Legal Update] 수사 · 기소 분리와 기업 형사사건 대응 - 검찰청 폐지,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참조), 정부는 10월 2일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후속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8월에는 중수청 시행령 · 직제 · 수사관 임용령을, 9월에는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의결해 조직 틀을 갖췄습니다(중수청 정원 2,874명,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 국회도 이에 발맞춰 형소법 개정에 따른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두 기관이 출범했지만, 수장 공백과 인력 · 시설 미비 속에 초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10월 15일 초대 중수청장이 임명되고 공소청 총장 인선 절차도 시작됐으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혼선을 사과하고 12월까지 안정화를 약속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6-9호 형사사법체계 개편, 제2022-4호 검 · 경수사권 조정 이슈 등 참조).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일괄해 정비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026-09-17 (수정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법무부)

□ **과제목표**

○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공수처의 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2025. 12. 19.)

□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국정과제]

○ **(추진단 지원)** 수사·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 입법례·통계·사례 제공 등 **추진단** 논의의 토대가 되는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

○ **(공익의 대표로서의 검사 역할 재정립)**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업무 수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검찰 업무 현황 및 역점 추진방안

	현황	역점 추진 방안
충실한 공소유지	· **검사 1인 평균 2개 형사재판부 담당** (주 4~5일 재판) · **변화된 공판환경**으로 **업무 증가**	· **1검사-1재판부 배치**로 공소유지 역량 강화
범죄수익환수 철저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업무범위 확대** · 서울중앙 전담부 신설('18. 2.) 후 추징 실적 제고(551억, 전체 추징액의 36%)	· 독립몰수제 도입, 해외 범죄수익환수 강화 · 서울남부·부산 **전담부 추가 신설**('26. 2.)
공익대표성 강화	· 전담제 실시 중이나 **업무 겸직**으로 전문성 부족 ·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한계	· **공익대표 전담팀** 확대 설치 · 유관기관 업무협약, **대국민 홍보**로 인식 제고
신속·엄정한 형 집행	· 공판부의 부수업무 ·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률 약 60%**로 제고 필요	· **형 집행 전담검사** 배치
국가송무 전문성	· 최근 5년간 국가소송·배상신청 **건수 증가, 소가 합계 42조** → 검사의 실질적인 소송수행 필요	· **송무사건 전담검사** 배치
형사부 실질화	· 접수사건 증가, 처리지연 심각 · 불송치 사건 사법통제력 저하	· **검찰 특화 AI** 도입('26.~'28. 3개년 계획) · 사법통제 전담부 인력 확충

출처: 법무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안 등: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2026. 8.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 민생범죄 집중을 위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의원 정책자료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 · 기소 분리의 문제점 국회의원 정책자료

공소청 개청 후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 7가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멀티미디어 뉴스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6. 10. 2.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멀티미디어 뉴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향후과제(Ⅰ)-지도·조언을 통한 새로운 협력체계의 정착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2026. 10. 15.

2026년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협력 및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사경의 수사경험과 전문성, 기관별 역량에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존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특사경 스스로 수사역량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지도·조언이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사실상 종전의 수사지휘로 회귀하지 않도록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정「형사소송법」의 변화와 필요 조치들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2026. 8.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로 인한 변화의 폭은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상당히 넓다. 개정 자체로 인해 시급히 뒤따라야 하는 조치들 또한 상당하다. 이하에서는 개정「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개정으로 인해 조속히 후속 정리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